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4년 6월 7일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4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94년 6월 26일(제4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관내 대학중 신학대학 및 성임여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추천권자 중 대학장을 충·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현행조례상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가 극소수의 기관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추천접수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대상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아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각계각층에서 좀더 많은 일꾼들을 추천함으로써 문화상 수상자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문화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나. 주요골자

- 대학장을 충·학장(총장 및 학장)으로 개정
 - 학 술 부 문 : 기타 학술 연구 기관대표 추가
 - 문화예술부문 :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회 대표 추가
 - 교 육 부 문 : 기타 사회교육단체 대표 추가
 -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 각종 자생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
 - 산 업 부 문 : 종업원 200인 이상 종사업체의 장 추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75
의 결 년 월 일	94. 6. 27 (제29회)

제안년월일 : 1994. 6월 26일

제 안 자 : 변용순의원의외 13인

1. 수점이유

-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부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 또한 핵가족화로 날로 삭막해져가는 현대사회에 지역사회 복지부문에 남다른 기여를 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상조례중 시상부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4조 ①항 제2호 동호인회 대표를 → 생활문화단체대표로 개정

나.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중 학술, 문화예술, 교육부문중 관내총·학장을 → 관내대학 총·학장
으로 개정

다. 제4조 4호중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을 환경복지부문으로 개정

라. 제4조 5호중 체육부문 수상자의 추천기관을 생활체육단체 포함 개정

마. 제4조 6호중 산업부문을 → 산업기술부문으로 개정, 종업원 200이상 중사업체의 장을 → 종업
원 100이상 업체의 장, 노동조합의 대표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생략) 1. 학술부문:부천시교육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2. 문화예술부문 부천시교육장, 관내대학장, 전문대학장, 고등학교장, 부친문화원장, 한국예총부친지부장 3. 교육부문 부천시교육장, 관내대학장, 고등학교장 4.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구청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부천시지부, 라이온스, 로타리클럽청년회의소 각대표 5. 체육부문:(생략) 6. 산업부문:구청장, 부친지방노동사무소장, 농협중앙회부친지부장, 부친상공회의소회장,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친지부장	제4조(현행과 같음) 1. 학술부문:..... 관내총.학장..... 기타 학술연구기관대표 2. 문화예술부문:..... 관내총.학장.....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인회 대표 3. 교육부문:..... 관내총.학장..... 기타사회 교육단체대표 4.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 구청장,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 자생단체대표 5. 체육부문:(현행과 같음) 6. 산업부문:..... 종업원 200인이상 중사업체의장	제4조(현행과 같음) 1. 학술부문:..... 관내대학총.학장..... 기타 학술연구기관대표 2. 문화예술부문:..... 관내대학총.학장..... 기타 문화예술단체및 생활문화단체대표 3. 교육부문:..... 관내대학총.학장..... 기타사회 교육단체대표 4. 환경복지부문 구청장,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 5. 체육부문:..... 생활체육단체대표 6. 산업기술부문:..... 종업원100이상 중사업체의장, 노동조합의 대표

[수정안포함]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조 제1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고등학교장” 다음에 “기타학술연구기관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2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한국에총부천시부장”다음에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3호중 “관내대학장”을 “관내대학총·학장”으로 하고 “고등학교장” 다음에 “기타 사회교육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4호중 “지역사회발전(봉사)부문”을 “환경복지부문”으로 하고 구청장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부천시지부,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대표”를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 환경관련단체, 보건단체, 사회복지단체, 여성단체대표”로 하고, 동조 제5호중 “부천시체육가맹단체회장” 다음에 “생활체육단체대표”를 신설하며 동조 제6호중 “산업부문”을 “산업기술부문”으로 하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장” 다음에 “종업원 100인 이상 중사업체의 장, 노동조합의대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4년 6월 8일
- 나. 제 안 자 : 박상규의원의외 9인
- 다. 회부일자 : 1994년 6월 8일
- 라. 상정및의결일자 : 1994년 6월 8일
- 마. 재회부일자 : 1994년 6월 15일
- 바. 재상정및의결일자 : 1994년 6월 22일